유치권 포기 각서

□ 수신 : ㈜바른크라우드대부, [illegible](시행자의 지위에서) 귀중

□ 사업명 : 종로구 행촌동 다세대 신축사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482외 7필지(96.68평)

□ 채권자 겸 수익권자 : ㈜바른크라우드대부

본인은 상기 사업지(이하 "대상부지")에 다세대/1종근생시설의 건설을 위한 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시공자로서, 상기 대상부지를 담보로 ㈜바른크라우드대부(이하 "대주")와 차주 겸 시행자 [illegible](이하 "차주") 사이에서 체결된 일금 팔억오천만원(₩850,000,000)의 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대출약정")에 따라, 차주의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대출약정에 따른 일체의 채무가 전액 상환 및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본건 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차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기타 채권과 관련하여 대상부지 위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 기타 제반 시설 포함)에 대하여 일체의 유치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와 배치되는 어떠한 물권적, 채권적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상기 내용 위반 행위로 인하여 대주의 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본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2019 년 2 월 26일

붙임: 인감증명서 1부

위 각서인 (시공자)

성 명 [illegible]

주 소 주식회사 필 건 설

대표이사 박 명 철

주민등록번호